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785
------	------

2024. 5. 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4월 3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4.30.)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람료 할인 대상에 추가하여 시 주요사업 활성화 및 시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획전시 관람료 할인 대상에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추가함

(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사업인 기후동행카드의 이용자를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의 관람료 할인 대상에 명시하여 단기적으로는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미 이용자들을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로 전환하며,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음.

나. 기후동행카드

- 기후동행카드는 출·퇴근 등 이동에 있어 탄소배출이 높은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등 저탄소·고효율의 이동 수단으로 전환함으로써 현재 당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고물가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27.-6.30.까지의 시범기간을 거쳐 본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기후동행카드는 교통수단의 변환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모달 시프트¹⁾(전환교통)의 사례이며, 현재 100만장 이상의 누적 카드 판매 실적과 49.4%의 카드 사용률(51만명 이상)을 기록(2024.04.11. 기준)하고 있음.
- 기후동행카드의 정책 모델인 독일의 도이칠란트 티켓(월 49유로)은

1) 모달 시프트란 기존에 이용하던 운송수단을 보다 효율성이 높은 운송수단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교통에서는 기존에 이용하던 교통수단을 다른 수단으로 전환하는 일을 말함.

전국을 대상으로 운영되는데, 이러한 특성을 제외하면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모바일 구매 및 사용 등 기후동행카드와 그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됨.

< 독일 도이칠란트 티켓 및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주요내용 >

구분	도이칠란트 티켓(49유로 티켓)	기후동행카드
시행기간	2023.5.1.~2025.4.30.(3년간)	2024.1.27.~6.30.(7월 본사업 시행)
월정액 요금	월 49유로(약71,000원)로 무제한 사용	62,000원(따릉이 제외)/65,000원(따릉이 포함)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 전역 대중교통 이용가능 (다만, 고속철도인 ICE, IC/EC, 특급열차, 고속버스(FliBus)는 제외) 2등석만 이용가능 자전거는 별도 티켓 구매 6세 미만의 아동은 동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지역 지하철,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따릉이 * 신분당선, 광역버스, 타 시·도 버스 제외 다만 업무협약에 따라 4월부터는 인천, 김포 대중교통(김포골드)이 추가 되었음
구매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DB(독일철도) 홈페이지, DB Navigator앱, DB여행센터 및 지역교통앱 등 온라인에서 디지털 티켓으로만 구매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바일: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구매·충전 실물: 서울교통공사(1~8호선) 고객센터 및 9호선 역사 인근 편의점 구매 후 무인충전기 충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월 10일 전에는 취소가능 49유로 교통티켓은 출퇴근용 티켓의 의미가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고용주가 티켓 가격의 25% 이상을 부담하여 티켓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티켓 요금의 5%를 할인해 주기를 합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만료일 전 기후동행카드 충전가격에서 누적 이용요금 및 수수료 제외 후 환불 가능 실물카드 부정사용 방지방안으로 홈페이지 미 등록 시 카드 충전 불가 등 마련

다. 개정안의 필요성

- 동 개정안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추가적인 혜택 제공을 통해 기후동행카드 이용 촉진을 도모하고, 더 많은 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게 하여 탄소 이동수단인 승용차 이용률의 감소와 저탄소 대중교통의 이용 증대를 통해 당면한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후동행카드가 시범사업 단계에서 이미 예상 이용객 수(약 50만명)를 초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의 정책 목표를

일정 부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공공시설 이용 사용료 할인 또는 감면 혜택이 꼭 필요한 것인지는 광범위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더하여 문화본부는 시립미술관 특별전 입장객 중 10%의 인원을 기후동행카드 할인 대상으로 추산한 바, 조례 시행 첫해에는 약 2백 6십만원, 그 다음해에는 약 4백 4십만원의 입장료 수익이 줄어들어 5개년 동안 총 약 2천만원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입장료 감면에 따른 시립미술관 세입 감소 예측분 >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수입	감면입장료	2,682	4,410	4,410	4,410	4,410	20,323
	소계	2,682	4,410	4,410	4,410	4,410	20,323

- 50만여명의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청년층인 2030세대가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고, 청년층은 다른 세대에 비해 약 2배 이상 미술관 관람 경험²⁾이 있는 것을 볼 때, 문화본부가 예측한 할인 대상의 비율이 당초 관람객의 10%보다 증가할 수 있어 세입 감소분의 명확한 추계와 감소분 증가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함.
- 올해 세종문화회관은 대략 월 3,300원에 세종시즌 공연을 최대 40% 할인받을 수 있는 구독서비스를 출시하여 판매분 전량이 매진된 사례를 참고할 때 단순 감면보다는 현재 따릉이 추가에 따라 권종을 달리하듯 시립미술관을 비롯하여 다른 서울시 문화시설 이용료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권종의 카드를 마련하여 각 시설들이

2) 서울문화재단, 2022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2023년 6월, p.32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면서 시민들이 기후동행카드를 선심성 사업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음.

- 또한 미술관 관람료 할인의 주목적이 기후동행카드 이용 확대 및 활성화인 만큼, 기후동행카드 이용을 통해 탄소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경우 동 사업은 시범사업에 불과하고,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것인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현재 기후동행카드가 그 목표한 바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움.
- 이에 서울시 통행속도 보고서와 도로 재비산먼지³⁾ 농도 및 서울교통공사 수송실적 등을 통해 도로 교통상황의 변화와 대중교통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기후동행카드의 효과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결과 각 요인들이 전년 동월 대비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거나, 유효한 경향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후동행카드가 교통 수단의 전환을 형성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2023 및 2024년 1~2월간 서울교통공사 승차인원 >

(단위: 명)

구분	일평균	1월	2월
2024년(1~9호선)	4,246,635	132,938,409	121,859,670
2023년(1~9호선)	4,097,441	119,464,267	122,284,758

3) 도로 재비산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 타이어 마모, 브레이크 패드 마모 등에 의해 도로 위에 침적된 먼지가 차량의 이동에 의해 대기 중으로 재 비산되는 입자상 물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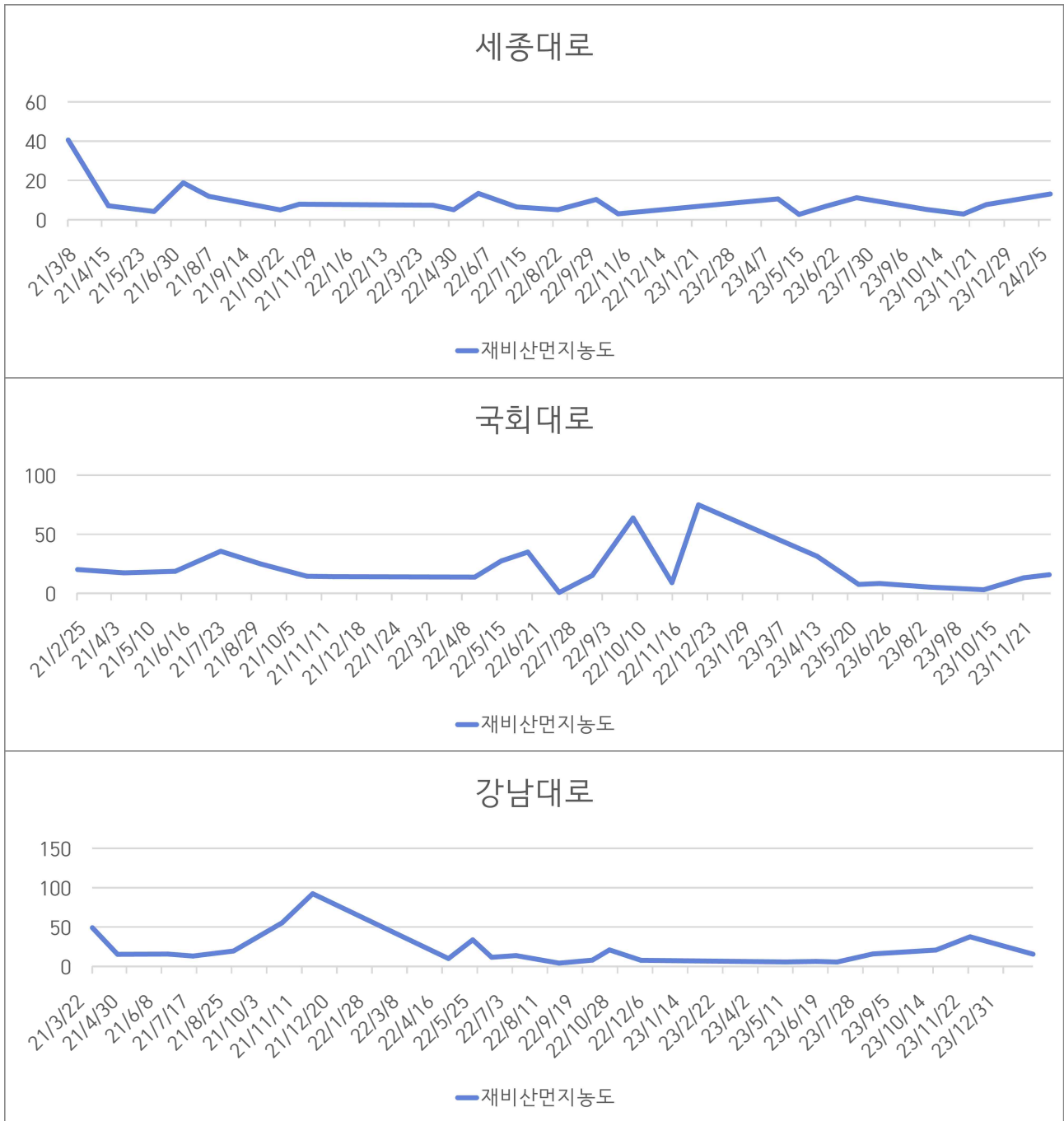
< 2023~2024년 월간 서울시 전체 통행속도 >

(단위: km/h)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4(A)	23.2	22.9	23.0	-	-	-	-	-	-	-	-	-
2023(B)	23.3	22.9	23.0	22.9	22.8	22.8	22.6	22.6	22.1	23.0	22.2	22.7
증감(A-B)	△0.1	0.0	0.0	-	-	-	-	-	-	-	-	-

* 2024년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 월간 통행속도 보고서

< 2021~2024년 시내 주요지점 도로 재비산먼지 농도 현황 >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시스템 측정 정보 가공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전체 응답자 (2,823명) 중 127명이 월 20회 이상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50여만명의 기후동행카드 사용자의 약 4%인 2만여명이 교통수단을 전환했다고 추정하였음.
- 현재 기후동행카드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자료가 도출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효과성의 입증과 더불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 이후 개정을 논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임.

라.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관람료 할인(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 서울시는 시민의 문화·예술 증진을 위하여 미술관을 건립 및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61조4)에 따라 그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법」 제156조5)에 따라 사용료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할 때 조례로 사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음(법제처 2016. 9. 22. 의견제시 16-0260). 이에 서울시는 미술관을 이용하는 시민 중

4)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5)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일부에 대해서 시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미술관의 관람료 할인을 조례에 명시하여 감면하고 있음.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관람료) ①·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기획 전시에는 서울특별시 또는 시 출연기관이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문화시설 및 공원시설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이용한 후 1개월 이내에 미술관을 관람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⑥ (생략)</p>	<p>제8조(관람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기획 전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 ----- ----- -----.</p> <p>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이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문화시설 및 공원시설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이용한 후 1개월 이내에 미술관을 관람하는 사람</p> <p>2.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p> <p>④ 제3항에 따른 할인관람료는 관람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p> <p>⑤ (현행 제6항과 같음)</p>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이 있으므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관람료 할인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에는 특별한 법제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더하여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가 「지방자치법」 제16조6)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만이 아니더라도 미술관 등 시설은 공공시설로서 사무의 주체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고,

6)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⁷⁾를 볼 때 서울시민이 아닌 자에게도 입장료 할인 등을 조례에 명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결제수단의 차이에 따라 감면을 나누는 것이 주민간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문안 및 자구 수정 등(안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35조까지)

- 안 제9조는 면제 대상을 명확히 기술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35조까지는 현행 어문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어색한 표현 등을 수정하였음.
- 법제처는 국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법 문장 자체를 쉽고 반듯하며 명확하게 쓰도록 기준을 수립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조례가 시대 변화에 맞게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임.

7) 법제처 2020. 8. 26. 의견제시 20-0189, 통영시 출신 출향인에게 향인증을 발급하고, 향인증을 받은 자를 통영시가 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의 대상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

IV.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 기후동행카드가 다양한 디바이스 기능을 활용하여 이용 활성화가 되도록 기능 확대 건의드립니다.
- 답변: 담당 부서에 전달하여 건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 하겠음.
- 질의: 미술관과 기후동행카드의 운영 목적이 다르고, 관람료 감소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는 있음. 시민 문화향유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기후동행카드 소지자에 대한 할인보다는 문화동행카드 등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부담 없이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답변: 시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겠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7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85
----------	------

제출년월일 : 2024년 4월 3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람료 할인 대상에 추가하여 시 주요사업 활성화 및 시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획전시 관람료 할인 대상에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추가함
(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4. 3. 8. ~ 3. 28.)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문화본부 박물관과 정익승 (☎2133-4237)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전시에는 서울특별시 또는 시 출연기관이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문화시설 및 공원시설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이용한 후 1개월 이내에 미술관을 관람하는 사람에 대하여는”을 “기획전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이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문화시설 및 공원시설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이용한 후 1개월 이내에 미술관을 관람하는 사람
 2.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
- ④ 제3항에 따른 할인관람료는 관람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9조의 제목 “(무료관람)”을 “(무료 관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다둥이”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둥이”로 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제11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경우에도”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6조제5항 단서 중 “허가”를 “대관허가”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주의 의무”를 “주의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승인 없이”을 “승인없이”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원상 복구”를 “원상복구”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대여허가조건”을 “대여허가 조건”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상호 간”을 “상호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상”을 “이상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9조제3호 중 “대관 허가”를 “대관허가”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때”를 “때에”로 한다.

제31조제3항 단서 중 “3분의2이상의”을 “3분의2 이상의”으로 한다.

제32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해당업무”를 “해당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간 위탁 할”을 “민간위탁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서 무료관람 대상으로 지정한 사람
- 5. ~ 11. (생략)
- 12.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 13. ~ 18. (생략)
- ② (생략)

제11조(대관허가) 시장은 미술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대관허가 신청) 전시실 대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미술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관하려는 자의 주소 및 성

-----.

- 1. ~ 3. (현행과 같음)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5. ~ 11. (현행과 같음)
- 1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둥이-----

- 13. ~ 18.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대관허가) -----
----- 범
위-----

-----.

제13조(대관허가 신청) -----

-----.

- 1. -----

명(단체의 경우에도 그 단체
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2. ~ 5. (생략)

제16조(대관료) ① ~ ④ (생략)

⑤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
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가를 받
는 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전시시설을 이용하지 못하
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9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
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
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3조 규정에 따라 대관허
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
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생략)

② 대관자는 제19조제1항의 관
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
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 경우에는 -----

2. ~ 5. (현행과 같음)

제16조(대관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대관허가-----

-----.

제19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

----- 주의의무-----
----- .

② -----
----- 승인없이

----- .

제20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22조(미술관자료 구입) ① 시장
이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
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려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되 미술관자료추천회
의와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제27
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25조(미술관자료 열람 등) ① ·
② (생략)
③ 미술관자료의 대여허가조건,
유료·무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미술관자료기증) ① ~ ③
(생략)

④ 미술관자료기증과 관련된 각
위원회는 위원 상호 간 중복 위
촉하지 아니한다.

⑤ 수증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⑥ (생략)

⑦ 시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증정하고, 기증자의 요구가 있
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구-----.

제22조(미술관자료 구입) ① ----

----- 범위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미술관자료 열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대여허가 조건

-----.

제26조(미술관자료기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상호간 -----
-----.

⑤ -----
----- 이상의 -----
-----.

⑥ (현행과 같음)

⑦ -----

----- 범위-----

기증미술관자료 평가액의 20% 한도 내에서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증미술관자료의 평가액은 미술관 가격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2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

- 1. 2. (생략)
- 3. 대관허가 심의에 관한 사항
- 4. 5. (생략)

제30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 ③ (생략)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위원회 회의)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작품구입은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제29조(위원회 기능) -----

- 1. 2. (현행과 같음)
- 3. 대관허가-----
- 4. 5. (현행과 같음)

제30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때에 -----.

제31조(위원회 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3분
----- 의2 이상의-----.

제32조(위원수당) -----
----- 범위-----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자체규정의 제정 및 민간 위탁) ① (생략)

② 관장은 미술관 업무 중 공공 서비스의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미술관의 업무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

제35조(자체규정의 제정 및 민간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해당 업무-----.

③ ----- 민간위탁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제8조(관람료)제3항제2호에 관람료 감면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를 추가하고자 함
- 이에 유효한 기후동행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관람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세입감소가 발생함

2. 비용추계의 전체

- 감면기간 : 2024년 5월 22일(조례 공포·시행예정일) 이후 발생
- 감면비율 : 14% 적용(다동이 행복카드와 동일비율 적용)

(에드워드 호퍼 입장료)

대 상	입장료
일 반	17,000원
청 소 년	15,000원
어 린 이	12,000원
다동이 행복카드	입장료의 2,000원 할인

- 예상 할인 입장비율 : 10% [기후동행카드 이용자(50만)/전체일평균대중교통이용자 (500만)]
- 연간 평균 유료입장 수입 : 315,017천원
- (유료전시3회 수익)÷6년('19~'24년)으로 계산(유료전시 2년당 1회 개최, 24년 미개최 예정)

(단위 : 천원, 명)

구분(전시명)	전체 입장객수	입장료 수익
합계	807,529	1,890,107
'19년 데이비드호크니	375,350	697,068
'21년 빛: 테이트 특별전	101,053	489,897
'23년 에드워드 호퍼	331,126	703,142

○ 비용추계 산식

- 1차년도 : 연평균 입장료 수익(315,017천원) × 0.1(기후동행카드할인자 비율 10%) × 0.14(감면비율 14%) × 222일/365일 = 2,682천원
- 2차년도 : 연평균 입장료 수익(315,017천원) × 0.1(기후동행카드할인자 비율 10%) × 0.14(감면비율 14%) = 4,410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수입	감면입장료	2,682	4,410	4,410	4,410	4,410	20,323
	소계(b)	2,682	4,410	4,410	4,410	4,410	20,323

4.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시비	지방세수입	-	-	-	-	-	-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등	-	-	-	-	-	-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	-	-	-	-	-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문화본부 박물관과 정익승(02-2133-4237)